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0일, 이상식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4.11.25.)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상식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서기영 전문위원)

개정안은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현행법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① 어린이집의 영유아, ② 유치원의 유아, ③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④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장과 교육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7조제2항).

이를 근거로 소방청은 유아, 초·중·고등학생, 성인,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¹⁾, 해마다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약 923만 명이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하였음.

<최근 3년간 소방안전교육 현황>

(단위 : 명)

연도	합계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	노인
2023년	9,234,640	1,432,856	2,317,991	1,520,209	3,381,548	582,036
2022년	6,510,842	1,125,616	1,735,187	1,247,173	1,848,911	553,955
2021년	4,920,289	679,688	1,334,813	1,040,980	1,310,243	554,565

(자료: 소방청)

소방안전교육훈련은 해당 시설의 장 등이 ① 소방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²⁾ ② 관할 소방서에 유선을 통하여 사전예약을 하고 관할 소

1) 구체적으로,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제5호(장애인안전관리에 관한사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시설의 장이 주관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2)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전국 119체험관, 소방서 접속 및 검색이 가능하며, 접속방법은 다음과 같음.

방서와 교육신청자가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한 후 시행하는데,

교육 대상자가 소방안전체험관 또는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체험을 하거나 소방안전강사³⁾가 해당 시설이나 교육장을 방문하여 출장교육을 실시하거나 또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통한 체험행사를 하는 방식으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됨.

☞ 소방청 홈페이지 - 안전정보 - 체험안내 - 지역별 체험관 현황(연계된 홈페이지 접속 후 예약)

☞ 소방청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일반현황 - 전국소방기관안내 - 관할지역 소방서 검색 후 유선으로 예약접수

※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경우, 별도로 유선을 통하여 협의할 필요 없음.

(자료: 소방청)

3) - 소방안전강사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근거하며, 강사자격,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참조

<소방안전교육 내용(예시)>

대상	교 육 주 제
유아 안전 교육⁴⁾	○ 교육과정을 화재 및 재난안전, 생활 및 교통안전의 2개 영역으로 대분류하고, 다시 활동주제에 따라 2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주제별 내용에 따라 교육 -화재 및 재난 안전: · 화상원인, 화상 응급처치, 화재시 위험행동, 화재 시 연기를 피하는 방법 등 -생활 및 교통 안전: · 놀잇감 안전, 실내 안전, 놀이터 안전 약물 오남용 예방, 안전한 도로 횡단방법, 교통수단 이용 안전 등
학교 안전 교육⁵⁾	○ 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화재안전, 자연재해의 5개 영역을 대분류하여 중분류 14개, 학년에 따른 소분류 32개로 나누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 체계를 완성하는 등 연차별로 성인에 이르기까지 소방안전 교육체계를 갖춘. - 생활안전: 신체활동 안전, 유괴·미아사고 안전 -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 자전거 안전, 대중교통 안전 등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자살, 가정폭력 -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약물중독, 사이버중독 - 재난안전: 화재, 사회재난, 자연재난 - 직업안전: 직업 안전의식,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 등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상황별 응급처치 등
장애인 안전 교육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이동식 소방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소방안전강사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체험이 가능. * 장애인 이동체험차량 XR콘텐츠 : 장애인 포함, 그 조력자도 직접 체험 가능하며, 안전점검, 화재대피, 소화기구 등 정보 제공

(자료: 소방청)

4) 유아 대상 소방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1] 참조

5) 학교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2] 참조

＜소방안전교육 장비＞

구 분	종 류
화재안전 교육용	안전체험복, 안전체험용 안전모, 소화기, 물소화기, 연기소화기, 옥내소화전 모형장비, 화재모형 타켓, 가상화재 연출장비, 연기 발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완강기,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등) 계통 모형도, 화재대피용 마스크, 공기호흡기, 119 신고 실습전화기
생활안전 교육용	구명조끼, 구명환, 공기 튜브, 안전벨트, 개인로프, 가스안전 실습 모형도, 전기안전 실습 모형도
교육 기자재	유·무선 마이크, 노트북 컴퓨터, 빔 프로젝터, 이동형 앰프, LCD 모니터, 디지털 캠코더
기타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자료: 소방청)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제3조제9의3호)6),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7.>

1. 재난에 관한 대책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집행계획 등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함하고(제22조제8항제2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제2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제31조의2).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법에 따른 소방안전 교육·훈련 대상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비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현행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대상
구분	(정의)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 (제3조제9의3호)	(목적)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시 인 명·재산피해 최소화
대상	어린이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노인	-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 을 이용하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

개정안은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
는 대상에 ㉠ 아동복지시설⁷⁾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과 ㉔ 노인복지시설⁸⁾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 명)

	합계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2023년	93,362	397,703	93,056	387,391	306	10,312
2022년	89,997	369,452	89,698	358,447	299	11,005
2021년	85,502	332,856	85,228	321,500	274	11,356

(자료: 소방청⁹⁾)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노인복지시설의 노인의 경우 현행법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8)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9) ※ 출처 : 2024년 노인복지시설현황 통계집(보건복지부)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에 따른 소방교육·훈련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체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소방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을 현행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정기적인 소방교육·훈련을 통해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아동¹⁰⁾ 및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노인¹¹⁾은 현행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린이집의 영유아¹²⁾,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대상이 중복될 수는 있으나,

현행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각 시설 및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

10)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1)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음(제1조의2제5호).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용을 달리해서 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과 소방안전교육은 1회 교육보다는 반복 교육이 화재 등 재난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소방청은 화재취약계층인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의 노인과 아동이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알아야 함에도 소방청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정하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노인, 아동을 대상으로 소방청장 등이 유형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발생 시 스스로 대처능력을 강화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동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의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시설에의 홍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 1

유아대상 소방안전교육 표준(안)

(자료: 소방청)

대분류	활동명	주제	관련활동
화재 및 재난 안전	앗! 뜨거워!	화상원인	- 뜨거운/차가운 물건 찾아보기 - 화상 위험 물건이야기 나누기 - 화상 예방방법이야기 나누기
	흐르는 물로 식혀요	화상 응급처치	- 화상 경험이야기 나누기 - 병원놀이하기
	불이야! 불이야!	화재 시 주변에 알리기	- 화재를 알려주는 신호 찾아보기 - 화재경보음 소리 들어보기 - 화재감지기, 경보설비 관찰하기
	숨지 마세요	화재 시 위험행동	- 불이 나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와 화재 시 위험한 행동과 안전한 행동이야기 나누기 - 안전한 대피경로 조사하기 - 비상대피로, 비상구 표시를 확인하고 관찰하기
	뜨거운 연기를 피해요	화재 시 연기를 피하는 방법	- 연기의 위험성과 대피방법 이야기 나누기 - 연기대피 게임하기 - 화재대피훈련하기
	119로 신고하지요	화재신고	- 화재신고 역할극 해 보기 - 집 주소와 전화번호 알기 - 응급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 조사하기
	멈춰요, 엎드려요, 튕굴어요	옷에 불이 붙었을 때 행동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방법 이야기 나누기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행동 훈련하기
	어른과 함께 있어요	재난 대처방법	- 호우와 홍수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기 - 천둥, 번개가 칠 때의 대처행동 훈련하기
	땅이 흔들려요	지진 대처방법	-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 찾기 - 지진대피 행동 연습하기
	모래바람이 불어요	황사대처 방법	- 황사의 위험성 이야기 나누기 - 황사 발생 시 대처방법 이야기 나누고 실천하기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과 기관	-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편지 쓰기 -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초대하기 - 소방관, 경찰관 역할놀이 하기

대분류	활동명	주제	관련활동
생활 및 교통 안전	안전하게 놀이해요	놀잇감 안전	- 놀잇감 안전한 놀이방법 이야기 나누기 - 놀잇감 안전한 사용규칙 정하기
	살피면서 다녀요	실내안전	- 계단, 복도에서의 사고경험 이야기 나누기 - 실내에서의 안전한 약속 정하기
	끈 달린 옷은 위험해요	안전한 옷차림	- 안전한 옷차림 이야기 나누기 - 안전한 옷차림 패션쇼 하기
	악속을 잊지 않아요	놀이터 안전	- 놀이기구 안전한 사용방법 알기 - 놀이터 놀이 평가하기 - 유아들과 놀이터 안전한 규칙판 만들어 놀이 기구에 붙이기
	물놀이를 위해 준비해요	물놀이 안전	- 물놀이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준비운동하기 - 구조대 역할 놀이하기
	부모님이 주시는 약만 먹어요	약물 오남용 예방	- 약물오용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약의 농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약물 오용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함부로 만지면 안돼요	가정용 화학제품 사고 예방	- 가정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제품에 대해 이야 기 나누기 - 먹거나 만져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사진 찾아 분류하기
	어른과 손을 잡아요	보행안전 기본수칙	- 부모님과 보행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안전한 보행습관과 위험한 보행습관 이야기 나누기
	자동차가 멈춘 후에 건너요	안전한 도로 횡단방법	- 자동차의 속도/위험이야기 나누기 - 자동차 움직임 관찰하기 - 도로횡단 모의활동 하기
	갑자기 뛰어들지 않아요	뛰어들기의 위험	- 유아들의 옷 중 밝은 색의 옷 찾아보기 - 어두울 때 눈에 잘 띄는 색 실험하기
	밝은 색 옷을 입어요	날씨와 보행안전	- 카시트 및 보호장구 관찰하기 - 카시트 및 보호장구의 필요성과 착용방법 이야기 나누기
	카시트와 헬멧	안전보호 장구	- 안전띠처럼 물건을 고정시켜 주는 끈이 부착 되어 있는 물건 찾기
	조심조심 타고 내려요	교통수단 이용 안전	- 통학차량 이용 안전수칙 이야기 나누기 - 자동차 타기 놀이하기

참고 2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내용체계

(자료: 소방청)

영역	중분류	소분류
생활안전	시설 및 제품 이용 안전	시설 안전
		제품 안전
		실험·실습 안전
	신체활동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유괴·미아 사고 안전	유괴·미아 사고 예방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	교통표지판 구별하기
		길을 건너는 방법
		보행안전
	자전거 안전	안전한 자전거 타기
		안전한 자전거 관리
	오토바이 안전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과 예방
		오토바이 운전 중 주의사항
	자동차 안전	자동차 사고의 원인·피해
		자동차 사고예방법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학교폭력	학교폭력
		언어·사이버 폭력
		물리적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성매매 예방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방법
	자살	자살예방 및 대처 방법
	가정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약물 중독	마약류 피해 및 예방
		흡연 피해 및 예방
		음주 피해 및 예방
		고카페인 식품 피해 및 예방
	사이버 중독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스마트폰 중독 예방
재난안전	화재	화재발생
		화재발생 시 안전수칙
		소화기 사용 및 대처 방법
	사회 재난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 방법
		각종 테러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자연 재난	홍수 및 태풍 발생 시 대처 방법
직업안전	직업 안전의식	직업안전 의식의 중요성
		직업안전 문화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	산업재해의 의미와 발생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직업병	직업병의 의미와 발생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직업안전의 예방 및 관리	산업재해 관리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이해와 필요성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응급상황 시 행동 방법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폐쇄
		지혈 및 상처처치
		염좌 및 골절처치
		화상 응급처치
		갑작스런 상황에서 응급처치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은희)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홍보와 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제도 보완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시행을 2026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홍보와 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제도 보완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시행을 2026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함(안 부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u> <u>월이 경과한 날부터</u> <u>시행한다.</u>	부 칙 <u>이 법은 2026년 1월</u> <u>1일부터 시행한다.</u>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학교의”를 “학교·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의”로, “장애인복지시설의”를 “노인복지시설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생략)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 집·유치원·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 ----- ----- ----- ----- ----- ----- ----- -----학교·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의-----노인복지시설의-----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신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③ · ④ (생략)	<u>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u> <u>인</u> ③ · ④ (현행과 같음)
-------------------	---